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궁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8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0일
발 의 자: 남궁역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남창진,
민병주, 박수빈, 박춘선,
박환희, 봉양순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
이병윤, 이상욱, 이영실,
임춘대, 최민규, 허·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9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제3호 ‘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’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‘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57조제1항제5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3081000000004

비대상 사유서

요청인 : 남궁역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08.10.

회신일 : 2023.08.10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제1항제5호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3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57조제1항제5호	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	1,157,130

자료: 2023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